

경기인 등록비 징수 및 관리규정

2019. 12. 26.

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

제1조(목 적) 본 규정은 경기인 등록규정(2018.12.27./정기이사회 제정) 제9조(등록비 징수) “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 할 수 있다.”에 의거 관련 내용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경기인 구분) 경기인의 구분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1. 경기인 : 선수 및 지도자,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
2. 동호인 : 동호회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및 넓은 의미의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 포함
3. 통상 경기인이라함은 상기 1-2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경기인 등록 신청)

- ① 협회 관련 규정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 대상자가 등록 신청서를 등록비와 함께 제출한다.
- ② 동호인 회원은 입회 신청서와 연명부를 시·도 협회 또는 시·도 협회가 미 구성된 시·군·구 협회 회장이 일괄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등록 및 회원증 교부)

- ① 경기인의 자격 취득은 본회 승인일로부터 발생한다.
- ② 협회는 경기인 및 동호인 회원 명부를 매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원의 자격 상실) 경기인 및 동호인 회원의 자격은 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본 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한 자격이 상실한 사람.
2. 등록비 납부대상자가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.

제6조 (회원 등록비 납부)

- ① 경기인 및 동호인은 매년 등록비 10,000(원)을 납부한다.
- ② 다만 지도자 및 심판은 단계적으로 납부하기로 한다.
- ③ 필요에 따라 매년 등록비는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조정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7조(등록시기와 등록비 납부) 경기인 등록 시기와 등록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- ① 선수(회원)
 1. 매년 선수등록 시점(통상 3. 31.이전)에 납부한다.
 2. 등록비 납부 : 년 1회(매 해년)
- ② 동호인(회원)
 1. 등록 시기 : 년 1회(1월초부터 3월 말까지)
 2. 등록비 납부 : 년 1회(매 해년)

제8조(등록비 배분) 징수된 등록 회비는 일정 비율(50%)을 해당 등록 시·도 협회에 재분배 한다.

제9조(등록비 사용 범위)

- ① 확보된 재원은 일정 비율로 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
- ② 경기인의 지위 향상과 육성 발전 부문
- ③ 동호인의 지위 향상과 육성 발전 부문
- ④ 경기인 및 동호인의 권익 보호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- ⑤ 경기인 및 동호인의 대회 및 사업에 관한 부문
- ⑥ 필요시 협회 운영에 관한 부문

제10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.

- 1. 본회 지도자 자격 점정 및 관리 규칙에 의한 응시 자격
- 2. 본회 경기 규칙에 의한 대회 출전 자격 획득
- 3. 본회 규정 및 규칙의 제반 권리 및 의무 사항 이행 자격 취득

제11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(사)대한체조협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종목 종사자로서 제반 의무
- ② 본회 제 규정 준수

제12조(관련규정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등은 체육회 관련 규정을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 12. 26.)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